

## 미국 영재교육법률의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말랜드 보고서를 중심으로

강 병 직

청주교육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말랜드 보고서를 중심으로 미국의 영재교육법률에 관한 변천 과정을 다루고 있다. 연구 결과, 연방 차원에서 제정된 법률 가운데 영재교육이 법적 차원에서 다루어진 최초의 법률은 1958년 국가방위교육법(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영재에 관한 법률적 정의가 제시된 것은 말랜드 보고서(1972년)보다 앞선 1970년의 초중등교육법입이 확인되었다. 또한 말랜드 보고서는 영재에 대한 정의 외에도 차별화된 교육과정(differentiated curriculum)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영재교육에 관한 연구와 운영을 총괄하는 국가 센터와 기구의 설립 제안 외에도 영재교육을 특정한 법률의 제정과 법률에 예산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점을 제안함으로써, 이후 영재교육이 법과 제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주제어: 영재교육법률, 말랜드 보고서, 국가방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영재 정의

### I. 서 론

우리나라의 영재교육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지난 2000년의 영재교육 진흥법 및 2002년의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의 제정·공포라고 할 수 있다(박성익 외, 2003; 이희권, 2009; 이재분, 강병직, 이덕난, 2012). 이들 법령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영재와 영재교육에 대한 정의가 마련되고 그에 따른 일관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영재교육 진흥법과 시행령은 영재교육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영재교육에 대한 개념 정립 및 관련 제도와 법률 체계 수립에 있어 미국의 말랜드 보고서(Marland Report, 1972)와 자비츠 영재교육법(Jacob K. Javits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Education Act, 1988)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영재교육 제도와 법률은 중요한 참고가 된다.

가령 우리나라 영재교육 진흥법 및 시행령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으로 여겨지는 조석희와

오영주(1997)의 ‘영재교육 정책 연구’는 그 예에 해당된다. 당시 교육부의 수탁으로 진행된 이 연구는 영재교육의 안정적, 실효적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서 영재교육 진흥법 및 시행령의 기본 체계를 제시하였는데, 연구자들은 영재를 ‘잠재능력이나 재능이 뛰어나 특별한 교육을 받게 할 필요가 있는 자’로 정의한 것이나,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의 분야를 ‘일반적 지능’, ‘특수학문적성’, ‘창의적 사고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기타 특별한 재능’으로 정의하는 등 말랜드 보고서와 자비츠 영재교육법에 제시된 영재 정의와 영재교육 운영의 제도적 골격을 수용하였다(조석희, 오영주, 1997: 136-156). 그 후로도 말랜드 보고서와 자비츠 영재교육법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영재교육 제도와 법률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로 다루어져 왔다(이재분, 강병직, 이덕난, 2012).

그러나 말랜드 보고서와 자비츠 영재교육법은 그 명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이들의 세부적인 사항 즉, 작성 및 제정의 경위와 배경, 정확한 내용과 영향은 물론 자비츠 영재교육법 제정 이전에 어떤 법률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알려진 미국의 영재교육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알려진 상태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확하게 알려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의 영재교육사를 제시하고 있는 영재교육 관련 출판물들은 미국에 영재교육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한 것이 ‘1969년 제정된 초중등교육법(공법 91-230)’이라고 기술되어 있다(구자역 외, 2002: 11-12; 박성익 외, 2003: 22). 그러나 미국은 이미 1958년에 영재학생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법률로서 국가방위교육법(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 P. L. 85-864)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에는 ‘뛰어난 학생에 대한 지원, 상담 및 평가: 판별과 지원’(Guidance, Counseling, and Testing: Identification and Encouragement of Able Students) 조항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1969년의 초중등교육법 이전에서부터 영재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영재 정의와 관련된 말랜드 보고서를 소개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내용적 오류가 발견되기도 한다. 가령, 한 연구에서는 “말랜드 보고서에는 ‘일반지능, 학문적 적성 창의적/생산적인 사고, 지도력, 시각 및 무대예술’의 5개 분야가 있었으며 그 후 1978년 미국 교육국에 의해 ‘신체 및 운동 능력’이 추가되어 6개 분야로 확대되었다”고 서술되어 있다(김태서, 2007: 6). 그러나 말랜드 보고서는 처음부터 ‘신체 및 운동 능력’을 포함한 영재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 등,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말랜드 보고서와 당시의 영재교육관련 법률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내용이 부분적이거나(영재 정의를 중심으로 한), 때로는 부정확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부분적 이해 또는 불완전한 내용 분석으로 인해 미국의 영재교육 제도와 법률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포괄적인 이해를 얻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더욱이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앞으로 정부는 영재교육의 수혜율을 확대하면서도 영재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질적 수준 관리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교육부 보도자료, 2013.10.4). 이는 영재교육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법과 제도가 더욱더 중요한 토대가 됨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의 영재교육 법률 제정 및 제도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친 말랜드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서 작성 전후의 영재교육법률의 제정 및 변천 과정과 말랜드 보고서의 작성 배경 및 경위, 주요 내용에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미국 영재교육 법률의 변천과 말랜드 보고서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영재교육 발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법과 제도의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미국 영재교육 법률의 변천을 둘러싼 당시의 시대적 맥락과 역사적 과정을 조사하였으며, 말랜드 보고서가 작성하게 된 경위와 과정 및 말랜드 보고서에 제시된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미국 영재교육 관련 법률 및 제도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과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제정된 법률 원본을 중심으로 한 문헌 연구 방법을 주요 연구 방법론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미국 영재교육 관련 법률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미국 의회 도서관(Library of Congress)에 전자문서를 보내 원본 확인을 위한 협조를 의뢰하였다(2013.2.28). 협조 의뢰 결과, 의회 도서관 측으로부터 법률 가운데 일부를 PDF형식의 문서로 제공받았으며, 본 도서관의 협조로 1951년부터 2009년까지 연방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원본 형태로 소장하고 있는 미 정부출판사무국(Government Printing Office, GPO)의 Federal Digital System (FDsys) 사이트(<http://www.gpo.gov/fdsys>)를 소개받고 이 곳에 탑재된 법률 원본을 검색하여 분석하였다.<sup>1)</sup>

## II. 미국 영재교육 법률의 제정 과정

미국에서 연방 정부 차원으로 영재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대략 1950년대 초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미 정부는 제2차 대전을 통해 소련의 위협과 공산주의 확산을 접하면서 미국 사회의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강화되어 지는데, 소련 등의 공산주의 국가들과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과학에 대한 강화가 주요 국가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방 정부는 1950년 5월 10일 과학 연구에 관한 국가적 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위한 국가과학재단법(National Science Foundation Act, P. L. 507)을 제정하게 된다.<sup>2)</sup> 국가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과학재단법은 조항 전반에 걸쳐 전체적으로 국가과학재단의 기능, 이사장, 위원회 및 부서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영재교육과 관련을 맺고 있는 조항은 ‘제3조: 재단의 기능(Sec. 3: Functions of the Foundation)’으로서(Stephens, 2008), 이 조항은 학교에서의 과학과 수학교육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P. L. 507, 1950).<sup>3)</sup>

1) 본고의 지면을 통해 법률 원본 검색에 큰 도움을 준 미 의회 도서관(Library of Congress) 측에 감사를 표한다.

2) P. L.은 Public Law의 약자임.

3) SEC. 3. (a) The Foundation is authorized and directed-- (1) to develop and encourage the pursuit of a national policy for the promotion of basic research and education in the sciences; (2) to initiate and support basic scientific research in the mathematical, physical, medical, biological, engineering,

제3조. (a) 재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도, 감독한다 - (1) 과학 분야에 대한 기초 연구와 교육 장려를 위한 국가 수준의 정책 개발 및 격려; (2) 계약 체결이나 또는 기금, 대출, 기타의 방법을 통해 수학, 물리학, 의학, 생물학, 공학 및 기타 과학 분야에 대한 기초 연구를 추진하고 지원하며, 산업의 발달과 일반 복리에 대한 연구의 영향을 평가하도록 함;

위의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연방 정부는 소련 등의 공산 국가로부터의 위협을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과학, 수학, 의학, 공학 분야에 대한 연구와 교육 강화를 추진하는데, 비록 법의 조항에는 영재(gifted 또는 able students)를 지칭하는 직접적인 언급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법을 통해 일선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을 지원하고 뛰어난 학생들이 과학과 수학을 진로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Russo, 2001). 그 점에서 국가과학재단법은 1950년대 초반, 미국 사회에서 법적 차원에서 수학과 과학에 뛰어난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영재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가는 초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공산국가와의 대치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1957년도에 있었던 소련의 스푸트니크호(Sputnik) 발사는 영재교육에 대한 연방 정부의 관심과 수학 과학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 계기로 작용된다(Stephens, 2008). 1958년 9월 2일 연방 정부가 제정한 국가방위교육법(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 P. L. 85-864)이 그 예에 해당된다. 당시 Eisenhower 대통령이 사인함으로써 공식 발효된 국가방위교육법은 서두에서 “국가 방위를 강화하고 긴급한 국가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과 확장을 지원함 (To strengthen the national defense and to encourage and assist in the expansion and improvement of educational programs to meet critical national needs; and for other purposes)”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P. L. 85-864, 1958). 연방 정부에서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이 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이라는 점에서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하지만, 교육을 통해 국가방위를 도모하겠다는 이 같은 발상은 미국의 국가 안보위기의 원인 가운데는 학교에서의 과학, 수학, 현대 외국어(modern foreign languages)에 대한 불충분한 교육과 불균형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연방 정부는 국가방위교육법 제정을 통해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지적 자원(mental resources)과 기술력(technical skills)을 최대한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과학, 수학, 현대 외국어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도록 하였다. 특히 국가방위교육법의 제5장(Title V)은 “뛰어난 학생들의 지도, 상담 및 검사: 판별과 지원(Guidance, Counseling, and Testing; Identification and Encouragement of Able Students)”을 제명으로 하고 있으며, 그 하위의 조항에 뛰어난 학생들의 지원에 관한 규정들을 명시하고 있다.<sup>4)</sup> 가령 제503조(Sec.503)는 뛰어난 학생들(able students)을 발굴하고 교육(identifica-

---

and other sciences, by making contracts or other arrangements (including grants, loans, and other forms of assistance) for the conduct of such basic scientific research and to appraise the impact of research upon industrial development and upon the general welfare;

4) 이 법에는 영재(the gifted), 또는 영재교육(gifted education)이라는 용어 대신 able students라는 용어를

tion and encouragement)하기 위한 예산으로 1,500만 불(1959-1962)을 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주에 대해 초·중등학교에서 뛰어난 학생(students with outstanding aptitudes and ability)을 발굴하고 이들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들이 초·중등교육을 마치고 동일한 진로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의 뛰어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P. L. 85-864, 1958). 이처럼 국가방위교육법은 제503조를 통해 초·중등학교에서의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를 위한 구체적인 예산과 지원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어떤 연방 차원의 법령보다 영재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된다(Stephens, 2008).

소련의 스푸트니크호 발사를 통해 촉발된 소련에 대한 경쟁의식과 이를 통한 미국의 경쟁력 강화의 열기는 그 후 Kennedy 대통령으로 이어진다. Kennedy는 재임시절(1961-63), 미국 학생들의 경쟁력과 이를 위한 교육의 질을 강조하며 우수한 과학자 배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지만, 급작스러운 서거로 인해 영재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은 추진력이 약화되었다. 그리고 후임으로 등장한 Johnson 대통령은 이전의 정책 이슈를 재점검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없었던 교육에 관한 별도의 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1965년 미국 역사상 연방 차원에서 제정된 법률 가운데 교육에 관한 항목만을 별도로 포괄한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P. L. 89-10)을 제정하였다(Tomiko, 2003). 특히 이 법의 제3장(Title III) 제303조에 연방기금의 사용(Uses of Federal Funds)에 관한 규정을 두고 ‘뛰어난 적성과 능력(outstanding aptitude and ability)을 가진 학생’을 수혜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재원 활용도를 명시하였다(P. L. 89-10, 1965).<sup>5)</sup>

.... 전략....

(4) 높은 수준의 과학 과목, 외국어 및 학교에서 가르쳐지지 않는 여타 과목의 학습에 관심을 지닌 학생들이나 또는 집중적 방식으로 더 효과적이거나 장애를 가진 학생 또는 학령기 이전의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지도방법과 장비를 지원함;

(5) 공립학교와 기타 비영리 학교나 조직, 교육기관 등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 최신식 교육 장비와 미술가, 음악가를 포함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구비하도록 함;

.... 후략....

사용하고 있다. 이는 영재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가 내려지기 이전에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able students를 넓은 의미의 영재 개념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 5) Sec. 303: (4) specialized instruction and equipment for students interested in studying advanced scientific subjects, foreign languages, and other academic subjects which are not taught in the local schools or which can be provided more effectively on a centralized basis, or for persons who are handicapped or of preschool age; (5) making available modern educational equipment and specially qualified personnel, including artists and musicians, on a temporary basis for the benefit of children in public and other nonprofit schools,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무엇보다 이 법은 그 자신이 교사 출신으로서 가난함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Johnson 대통령의 정치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소외되었던 교육적 약자 - 사회·경제적, 교육적 소수자와 장애학생 - 의 불평등 해소와 관련된 다양한 규정이 마련되었다는 점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영재학생들에 대해서도 연방 정부의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Tomiko, 2003: 41). 그러나 1965년의 이 법은 조항에 ‘뛰어난 적성과 능력을 가진 학생’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지원을 위한 상세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며, 그로 인해 결과론적으로 이전에 비해 영재교육을 위한 연방 예산의 지출이 삭감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Marland, 1972; Russo, 2001). 즉, 영재가 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교육 실천을 위한 구체적 예산 규정이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서, 이는 정부가 어떤 교육 정책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Marland는 당시 연방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 해소 등에 무게를 두고 있었고, 예산 배정과 관련하여 영재라는 대상 집단(target population)의 구체적 명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만일 예산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영재 교육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Marland, 1972: 105).

이처럼 Kennedy 대통령 서거 이후 영재교육에 대한 정책적, 사회적 인식은 1960년대 후반 동안 잠시 쇠퇴하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와 의회 및 시민 사회에는 영재교육의 중요성을 지지하고 있었으며 영재교육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계속된다. 그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1969년 1월 28일 하원의 Erlenborn 의원은 영재교육 지원을 위한 법안인 영재교육지원법(Gifted and Talented Children's Educational Assistance Act, H. R. 4807)<sup>6)</sup>을 대표 발의하게 되며,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한 법은 상원의 Javits 의원으로 넘겨진다. Javits 의원은 하원에서 올라 온 영재교육지원법을 반영한 제806조(Sec. 806) - 영재에 관한 규정(Provisions related to gifted and talented children)을 새롭게 추가한 초·중·등교육법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하게 된다. 그리고 1970년 4월 13일 이 초·중·등교육법 수정안에 대해 Nixon 대통령이 사인함으로써 영재교육에 관한 상세 규정을 갖춘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P. L. 91-230)이 제정된다(Zettel, 1982; Marland, 1971).<sup>7)</sup> 1970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신설된 영재교육 조항인 제806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P. L. 91-230, 1970).<sup>8)</sup>

6) H. R.은 House of Representative의 약자임.

7) 기존의 문헌에는 1969년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법안이 제출된 시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법이 제정된 시기는 1970년에 해당된다.

8) Sec. 806. (a) Section 521 of the Higher Education Act of 1965(relating to fellowships for teachers) is amended by inserting in the last sentence thereof after the words "handicapped children" a comma and the following: "and for gifted and talented child". (b) Section 1201 of such Act(relating to definitions) is amended by adding at the end thereof the following new paragraph: "(k) The term 'gifted and talented children' means, in accordance with objective criteria prescribed by the commissioner, children who have outstanding intellectual ability or creative talent". (c) (1) The Commissioner of Education shall: (A)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special educational assistance programs are necessary or useful

제806조. (a) 1965년 고등교육법 제521조(교원 fellowships)은 마지막 문장의 '장애아동(handicapped children)'의 뒤에 콤마와 다음의 '그리고 영재아동(and for gifted and talented child)'를 추가하도록 수정한다.

(b) 고등교육법의 제1201조(정의)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단락을 추가하도록 수정한다: (k) '영재(gifted and talented children)'란 교육위원회에 의한 객관적 기준을 따라 뛰어난 지적 능력 또는 창의적 재능을 가진 아동을 의미한다.

(c) (1) 교육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A) 영재아동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하거나 유용한 교육지원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결정한다, (B) 영재아동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의 어떤 연방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사용될 수 있는지를 제시한다, (C)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의 연방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그리고 (D) 필요하다면,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한지를 추천한다.

(2) 교육위원회는 이에 대한 추천과 함께 발견한 내용을 이 법의 제정 후 1년을 넘지 않는 시간 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06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항은 당시의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 P. L. 89-329, 1965) 가운데 초중등학교 예비 교사의 전문성 제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제521조(fellowships for teachers)의 'special education for the handicapped children'으로 끝나는 문장의 뒤에 'and for gifted and talented child'를 추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sup>9)</sup> 당시의 고등교육법 제521조는 교사 양성을 담당하는 대학의 프로그램의 질 제고와 예비 교사들에 대한 연구비(장학금) 지원을 다루고 있는데, 이 조항에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 예비 교사들에 대한 지원에 더해 '영재' 학생을 위한 예비 교사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항을 새롭게 포함시키도록 한 것이다.

또한 제806조는 하원을 통과한 영재교육지원법안(Gifted and Talented children's educational assistance Act, H. R. 4807)의 정의에 관한 제1201조(Sect. 1201)를 수정하여 "영재(gifted and talented children)"를 "뛰어난 지적 능력 또는 창의적 재능을 가진 아동(children

---

to meet the needs of gifted and talented children, (B) show which existing Federal educational assistance programs are being used to meet the needs of gifted and talented children, (C) evaluate how existing Federal educational assistance programs can be more effectively used to meet these needs, and (D) recommend which new programs, if any, are needed to meet these needs. (2) The Commissioner shall report his findings, together with his recommendations, to the Congress not later than one year after the enactment of this Act.

9) 고등교육법의 Sec.52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The Congress hereby declares it to be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offered by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of the Nation by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education of persons who are pursuing or who plan to pursue a career i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중략..... For the purpose of this part the term "career i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means ....중략.....persons who plan to become such teachers, or a career in fields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teaching in elementary or secondary schools, such as library science, school social work, guidance and counseling, educational media, and special education for handicapped children.

who have outstanding intellectual ability or creative talent)”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재에 대한 위의 정의는 미국 역사상 연방 차원에서 내려진 최초의 법적 정의가 된다(Russo, 2001; Carter, 2002).

비록 영재교육을 위한 예산에 대해 제806조는 별도의 기금 배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법 제3장(Title III)의 제303조-연방 기금의 사용(Sec.303-Uses of Federal Funds)에는 “영재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providing programs for gifted and talented children)” 항목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방 정부 교육 예산이 영재 교육을 위해 사용될 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P. L. 91-230, 1970). 그리고 제806조는 마지막에 연방 교육 위원(commissioner of education)으로 하여금 ‘영재학생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특별교육의 범위’, ‘현행 연방 정부의 영재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적절한가의 여부’, ‘현행 연방 영재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필요한 경우 영재교육의 필요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 법의 공포 이후 1년 이내에 의회에 보고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1970년의 초중등교육법(제806조)은 1958년의 국가방위교육법(제503조), 1965년의 초중등교육법(제303조)과는 달리 하원으로부터 상정된 영재교육법안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에 비해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비록 규정된 제806조의 내용은 적지만 영재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정의를 제시하고, 영재의 지원을 위해 교육위원으로 하여금 어떤 지원 방안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효과적인가에 대한 연방 차원에서의 조사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보고서의 결과를 이 법의 제정 후 1년을 넘지 않는 시간 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점은 영재교육에 관한 연방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된다. Marland를 교육위원으로 한 영재교육 조사가 착수된 것은 바로 이 규정에 근거한 이행 조치였다.

### III. 말랜드 보고서의 작성 과정과 영향

#### 1. 말랜드 보고서의 작성 과정

말랜드 보고서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Marland(1914-1992)가 영재교육에 관한 연방 정부 조사를 맡게 되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말랜드 보고서는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가장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된 영재교육에 관한 조사 보고서로서, Marland가 그와 같은 조사 보고서의 책임을 맡게 된 이면에는 당시 영재교육을 둘러싼 미국의 상황들이 긴밀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Marland는 1914년 8월 19일, 코네티컷 주의 테니얼슨(Danielson)에서 옷가게 주인이던 Sidney P. Marland, Sr와 Ruth Johnson Marland 사이에서 3형제 중 맏이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0)</sup> 그는 1932년 코네티컷 대학(University of Connecticut)에 입학하여 영어를 전공

10) Marland의 전기는 Jolly, J. L. (2009)의 Historical Perspectives: Sidney P. Marland, Jr. (1914-1992)



하였으며, 1936년에 졸업한 후 고등학교에서 영어와 드라마를 가르쳤다. 그리고 학교에 재직하고 있던 중 1942년에 2차 대전에 참전하여 남태평양에 배치되어 군복무를 하다가 대령으로 예편하였다. 군 전역 후 Marland는 1950년 코네티컷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곧이어 코네티컷 주의 데리언(Darien) 교육구의 교육감(superintendent)로 부임하게 된다.<sup>11)</sup> 그 후 일리노이 주의 위네트카(Winnetka) 교육구의 교육감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특히 그가 두 번째로 부임한 위네트카는 시카고 시내 북쪽에 위치한 부유한 학군으로서 전임 교육감이던 Carleton Washburne이 재임 시절(1914~1943)부터 영재교육이 중요한 교육정책으로 다루어진 곳이었다. 이곳에 재임하는 동안 Marland는 Washburne의 영재교육을 포함한 교육 정책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둘은 위네트카의 교육 역사를 다룬 책을 공동으로 저술하기도 한다.<sup>12)</sup>

그리고 위네트카 교육구의 교육감으로 재임하던 시기인 1959년, Marland는 영재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저조한 당시의 미국의 상황을 지적하며 학교에서 영재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피력한 글을 발표하였다. 글에서 Marland는 당시 영재교육의 주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던 속진(acceleration), 심화(enrichment), 집단편성(grouping)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영재들의 잠재성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사서가 중요한 자원이 되는 점을 강조하였다(Jolly, 2009: 41 재인용).<sup>13)</sup> 이 같은 사례는 말랜드 본인이 위네트카의 교육감 시절 영재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영재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을 펼쳐가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실제 그는 이와 같은 열정과 정책들에 힘입어 점차 자신의 입지를 다져가는데, 그가 펜실베이니아 주의 피츠버그 교육감으로 부임하는 1963년 그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인물로 부상하게 되며, 이를 계기로 백악관의 대통령 경제기획국 자문위원단(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for the Office of Economic Opportunity)의 자문위원을 맡게 된다. 그리고 이 자문위원단의 활동을 계기로 Nixon 대통령은 그를 미 연방 교육국장(United States Commissioner of Education, 1970-1972)으로 임명하며, 1972년 8월에는 건강교육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HEW)의 교육차관보(Assistant Secretary for Education, 1972~1973)로 임명하게 된다. 특히 그가 맡게 된 ‘교육차관보’라는 직책은 이전의 시기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1972년 처음 신설된 직책으로서, 그의 교육차관보 경력은 훗날 영재교육에 관한 총괄 조사 보고서 책임을 맡게 된 것의 주요 배경이 된다.

대통령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그는 헤드스타트(Head Start) 정책 추진에 깊

(Gifted Child Today. Vol. 32, No. 4, 40-65)과 말랜드 가문(Marland Family) 홈페이지([http://www.marland.org/people/sidney\\_marland.htm](http://www.marland.org/people/sidney_marland.htm)) 내용을 주로 참고하였음.

- 11) 1955년 뉴욕대학(New York University)에서 교육행정(Education Administration)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 12) 책은 다음과 같다. Washburne & Marland (1963). Winnetka: The History and Significance of an Educational Experiment.
- 13) Marland가 발표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Marland, S. P., Jr. (1959). The school librarian as a resource for the gifted student. NASSP Bulletin, 43, 163-169.

이 관여하여 큰 결실을 맺었으며, 동시에 장애아동교육을 위한 국가 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uncil on the Education of Disadvantaged Children)의 위원 활동 및 직업교육을 위한 국가 자문위원회(the National Advisory Council on Vocational Education)의 위원 활동을 수행하는 등 당시 추진된 주요 교육 정책에서 많은 공헌을 하였다.

이와 같은 Marland의 교육 및 영재교육 관련 경력과 능력을 인정한 미 연방 의회는 1970년 제정된 초중등교육법(P. L. 91-230) 제806조에서 규정한 연방 교육위원(commissioner of education)으로 그를 임명하게 된다. 그리고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그는 버지니아 대학의 Virgil Ward(University of Virginia) 교수, 코네티컷 대학의 Joseph Renzulli(University of Connecticut) 교수 등의 영재교육학자들과 일리노이주 부교육감인 David Jackson(Associate superintendent of Illinois State) 등의 교육관료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1970년 8월에 연구를 착수하여 1971년 6월에 종료한다(Marland, 1972). 보고서 작성을 위해 Marland는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와 당시의 교육 관련 데이터 분석, 그리고 영재교육 관계자들과의 면담 및 지역별 공청회 개최를 실시하였으며 영재교육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방법론을 통해 수행된 보고서는 1부와 2부(부록)로 구성되어 있으며, 8개의 장(chapter)으로 이루어진 1부는 내용적으로 볼 때 크게 영재에 대한 정의, 영재교육과정, 그리고 각종 정책 방안의 제안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sup>14)</sup>

우선 말랜드 보고서는 초두에서 영재 학생들의 특수한 요구 때문만이 아니라 연방 정부가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의회가 영재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과 개발을 지원할 것을 촉구하였다(Marland, 1972: 10-11).

## 2. 영재에 대한 정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말랜드 보고서는 영재교육의 연방 지원의 근거와 제도적 기초를 놓은 중요한 계기로 평가되며(Carter & Swanson, 1990; Jolly, 2009), 20세기 영재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0대 사건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Roberts, 1999). 특히 말랜드 보고서에 제시된 영재에 대한 정의는 영재교육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정의가 된다(Olszewski-Kubilius, 2003). 영재에 대한 정의는 주로 제2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는 먼저 “영재: 그들은 누구이며, 이들은 특별한 계획과 관심을 보증할 만큼 일반 아동과 충분히 다른가?(The gifted and talented: who are they? Are they really sufficiently different from the norm to warrant special planning and attention?)”를 질문하면서 당시까지의 다양한 연구 결과와 논의를 근거로 영재의 특성과 판별 방법 및 영재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였다.

우선 말랜드는 영재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당시 법률에서의 영재 정의에 관한 사례들과 그에 관한 현황들을 분석하였다. 영재 정의

14) 각 장별 제목은 다음과 같다. I : introduction, II: profile of gifted and talented population, III: Special planning needed, IV: What is a good program for the gifted? V: The state survey, VI: Four case studies, VII: The federal role-USOE delivery system, VIII: Summary, findings and the Office of Education's Response.

와 관련하여 당시 일리노이 주 정부는 “만일 영재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 규정할 경우 인간의 능력을 특정하고 규정하는 것에 대한 학술적 논란이 있으며, 굳이 법률(law)에 명기하지 않더라도 행정적 규칙(administrative regulations)이나 지침(formulas)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법률에 영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Marland, 1972: 38). 그러나 Marland는 이러한 일리노이 주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영재교육과 관련성을 지닌 법률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현실적으로 영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Marland, 1972: 104). 즉 영재라는 용어가 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영재 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이 어렵다고 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설득력 있는 영재에 대한 법적 정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Marland는 법률 상에 영재에 대한 정의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지나치게 세부적으로(too specifically) 영재를 규정할 경우에는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법률적 특성을 감안한 영재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Marland, 1972: 38).

이에 영재에 관한 법률적 정의를 규정하기 위해 말랜드는 영재 특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영재를 미친 천재(mad genius)나 특수한 계층이나 특권적 환경에서 출현하는 것으로 보는 인식을 비판하며 영재란 모든 계층에서 출현하는 존재로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와 당시 영재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규정된 영재 정의는 다음과 같다(Marland, 1972: 20-21)

영재란 뛰어난 능력으로 인해 높은 성취를 얻을 수 있는 아동들로서 전문가들에 의해 판별된 자이다. 이들은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또는) 자신과 사회에 대해 공헌하기 위해 정규 학교에서 제공되는 일반적 프로그램을 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이다. 높은 성취 잠재성을 가진 아동들이란 다음의 하나 또는 결합된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achievement)와 (또는) 잠재력(potential)을 지닌 자들이다:

1. 일반 지적 능력(general intellectual ability)
2. 특수한 학문 적성(specific academic aptitude)
3. 창의적 또는 생산적 사고(creative or productive thinking)
4. 리더십 능력(leadership ability)
5. 시각 및 공연 예술(visual and performing arts)
6. 신체운동 능력(psychomotor ability)

위의 영재 정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0년 제정된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제806호에 규정된 “뛰어난 지적 능력 또는 창의적 재능을 가진 아동(children who have outstanding intellectual ability or creative talent)”로서의 영재 정의를 확장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말랜드 보고서에 제시된 영재의 정의는 지금까지의 정의가 주로 지적 능력(intellectual ability)에 초점을 둔 것에 비해 능력의 영역을 지적능력뿐만 아니라 학문, 창의적, 리더십, 예술, 신체운동 영역으로 확대하였으며, 현재의 성취도(achievement)뿐만

아니라 잠재성(potential)을 포함함으로써 영재교육의 지평을 확장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Gagne, 1993; Passow, 1993). 그리고 말랜드 보고서의 영재 정의는 그 후 미국의 연방 및 주 정부와 각급 영재교육 기관 등에서 - 다소의 수정은 있으나 - 정의하는 영재 개념의 기본 틀을 제공한다.<sup>15)</sup> (<표 1> 참조)

<표 1> 미 연방 자원의 영재 정의 변화

출처	용어	정의 내용
국가방위교육법 제503조(NDEA, 1958, Sec. 503)	Students with outstanding aptitudes and ability	별도의 설명 없음
초중등교육법 제 806조(ESEA, 1970, Sec. 806)	Gifted and talented children	뛰어난 지적 능력 또는 창의적 재능을 가진 아동 (Children who have outstanding intellectual ability or creative talent)
말랜드 보고서 (Marland Report, 1972)	Gifted and talented children	뛰어난 능력으로 인해 높은 성취를 얻을 수 있는 아동들로서 전문가들에 의해 판별된 자(Those identified by professionally qualified persons, who by virtue of outstanding abilities are capable of high performance) - 이하 본문의 영재 정의 참조-
초중등교육법 제902조(ESEA, 1978, Sec. 902) <sup>16)</sup>	Gifted and talented children	지적, 창의적, 특수 학문분야 및 리더십, 또는 공연 및 시각 예술 분야에서 높은 성취능력을 보여주거나 그러한 잠재적 능력이 있으며, 그로 인해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지원이나 활동을 필요로 하는 취학 전(preschool),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아동 및 청소년
자비츠영재교육법 제4103조(Javits Act of ESEA, 1988, Sec. 4103) <sup>17)</sup>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지적, 창의적, 예술적, 또는 리더십 또는 특수한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 능력을 보여주며, 이러한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기 위해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지원이나 활동을 필요로 하는 아동 및 청소년
연방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1993) <sup>18)</sup>	Children with outstanding talent	또래의 연령, 경험 또는 환경과 비교할 때 뛰어난 수준의 성취도를 보여주거나 보여줄 잠재성을 지닌 아동 및 청소년. 지적, 창의적, 그리고/또는 예술 분야에서 높은 성취 수준을 보여주거나, 비상한 리더십을 소유하거나 또는 특수한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아동 및 청소년

- 15) 가령 오클라호마주(1994)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영재(Gifted and talented children)’란 뛰어난 수행능력을 보일 잠재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에 따른 차별화된, 또는 숙진교육이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유치원(preschool),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단계의 아동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정의에 있어, ‘뛰어난 수행능력을 보인(demonstrated abilities of high performance capability)’라는 것은 국가수준의 표준화된 지적 능력 검사에서 상위 3%에 해당되는 점수를 획득한 학생들을 의미한다. 영재는 또는 다음과 같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역에서 뛰어난 학생들을 포함한다: 창의적 사고 능력(creative thinking ability), 리더십 능력(leadership ability), 시각 및 공연 예술 능력(visual and performing arts ability), 특별한 학문 능력(specific academic ability) 등이 예에 해당된다(이재분, 강병직, 이덕란, 2012, 재인용).
- 16) 1978년 11월 1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P. L.95-561, 92 Stat.)은 제 9장(Title IX-Additional Programs)의 Part A(Gifted and Talented Children) 속의 Section 901-908에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Children and, whenever applicable, youth, who are identified at the preschool, elementary, or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영재를 지칭하는 용어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1958년의 국가방위교육법(NDEA, 제503조)이며, 1970년 제정된 초중등교육법(ESEA, 제 806조)에서부터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1971년 말랜드 보고서에 이르러 영재에 대한 종합적인 정의가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말랜드 보고서에 제시된 영재 정의의 기본 틀은 그 후 1978년의 초중등교육법(ESEA, 제902조)과 1988년의 자비츠 영재교육법으로 계승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약간의 수정이 이루어지는데, 가령 말랜드 보고서에서 제시한 영재 정의의 제 6호인 ‘신체운동 능력(psychomotor ability)’ 항목은 1978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이후부터 삭제되며, 이전에 없는 ‘취학 전(preschool)’ 조항이 추가됨으로써 영재교육 대상의 폭을 확장시키게 된다(Stephens & Karnes, 2000).

또한 1988년의 자비츠 영재교육법에서 부터는 이전에 사용되었던 ‘공연 및 시각 예술(performing and visual arts)’이 ‘예술(artistic)’로 바뀌며, 이전에 사용되었던 학교급인 ‘취학 전(preschool), 초등(elementary), 중등(secondary level)’을 삭제하고 ‘학교(school)’라는 명칭으로 학교급을 일원화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그 후로 지속된다. 그리고 1993년에 도입된 연방교육부 정의에서는 이전의 ‘타고난(gifted)’의 표현을 삭제하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동(Children with outstanding talent)’으로 영재를 정의한다. 이는 gifted라는 용어가 발전 가능성 보다는 이미 형성(formed)되었거나 멈춘(finished) 상태를 의미하며, 당시의 연구들이 영재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잠재성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즉, 보다 더 영재의 잠재성(potential talent)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Stephens & Karnes, 2000).

### 3. 영재교육과정

말랜드 보고서가 이후의 미국 영재교육에 미친 또 다른 중요한 영향은 영재교육과정에 관한 개념과 기본 체계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말랜드 보고서는 제4장을 중심으로 영재를 위한 교육과정이 무엇이며, 어떤 특성을 지니는가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였는데, 무엇보다 철학적 측면을 들어 영재를 위한 교육과정은 민주적 교육(democratic education)에

---

secondary level as possessing demonstrated or potential abilities that give evidence of high performance capability in areas such as intellectual, creative, specific academic, or leadership ability, or in the performing and visual arts, and who by reason thereof, require services or activities not ordinarily provided by the school.

- 17) 1988년 4월 28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P. L. 100-297. 102 Stat.)의 제4장(Title IV-Special Programs)에 영재에 관한 규정인 Part B(Gifted and Talented Children)의 Section 4101-4108의 8개 조항이 영재 조항으로 추가되었으며, 이는 Javits 영재교육법으로 불린다. Children and youth who give evidence of high performance capability in areas such as intellectual, creative, artistic, or leadership capacity, or in specific academic fields, and who require services or activities not ordinarily provided by the school in order to fully develop such capabilities.
- 18) Children and youth with outstanding talent perform, or show the potential for performing, at remarkably high levels of accomplishment when compared with others of their age, experience, or environment. These children and youth exhibit high-performance capability in intellectual, creative, and/or artistic areas, possess an unusual leadership capacity, or excel in specific academic fields

속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Marland, 1972: 71).<sup>19)</sup> 다시 말해, 장애(handicapped) 학생들이나 교육에서 어려움(disadvantaged)이 있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영재 역시 일반 교육과정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데, 그 점에서 영재학생들에게도 그들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러한 민주적 교육의 관점을 반영한다. 특히 Marland는 영재를 위한 교육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진행된 영재교육 관련 공청회에서 제시된 여러 증언들(testimonies)과 당시에 영재들에 관해 작성된 다양한 연구 결과들에 나타난 데이터를 참고하는데 영재를 위한 교육과정의 전제는 일반적인 정규 수업과정과는 차별화된 영재의 특성에 맞도록 특별히 고안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게 된다(Marland, 1972: 71).

그렇다면 어떤 교육과정이 영재를 위한 좋은 교육과정인가? 이에 대해 말랜드 보고서는 차별화된 교육과정(differentiated curriculu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영재교육과정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본래 차별화된 교육과정은 Ward(1961)가 제시한 ‘영재를 위한 차별화된 교육(differential education for the gifted)’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서, 1960년대를 통해 차별화된 교육, 또는 차별화된 교육과정이라는 표현으로 널리 확산된다(Gubbins, 1994). 이러한 개념을 도입하여 말랜드 보고서는 차별화된 교육과정이란 첫째, 고도의 인지적 개념과 과정을 포함한 차별화된 교육과정(a differentiated curriculum which denotes higher cognitive concepts and processes)이어야 하며, 둘째, 영재의 학습 양식과 교육내용을 수용하는 교수전략(Instructional strategies which accommodate the learning styles of the gifted and talented and curriculum content)이어야 하고, 셋째, 특별반, 명예반, 세미나, 자료집 등과 같은 행정적 절차를 포함한 특별반 편성(special grouping arrangements which include a variety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ppropriate to particular children, i. e., special classes, honor classes, seminars, resource books, and the likes)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았다(Marland, 1972: 9).

그리고 보고서를 통해 Marland는 영재들은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도 빨리 소화하고 학습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속진(acceleration) 교육과정, 뉴욕과 클리블랜드 및 로스엔젤레스에서 수행된 사례 연구를 통해 볼 때 영재학생들을 별도의 반으로 구성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영재 집단에 비해 수업 결과 학업에서의 성취뿐만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 영역에서도 성취가 나타났다는 점을 토대로 특별반(special class) 운영과 같은 교육과정, 그리고 어려움을 지닌 영재들에게 1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상담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을 때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자아태도, 사회적 관계에서 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영재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Marland, 1972: 71-73). 이러한 내용들은 영재들의 경우, 정규교육과정만이 아니라 별도의 교육과정이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서 이후 영재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제도화되는 데 기여한다.

또한 말랜드 보고서는 영재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첫째, 학교 인력(교사 및 영재의 학습 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체계적인 연수(in-service)의 지원,

19) Gifted and talented children .....생략..... require differentiated educational programs and services beyond those normally provided by the regular school program in order to realize their contribution to self and society.

둘째, 연구와 실험적 프로그램 - 가령 영재 판별, 프로그램 평가 방식 개선, 예술분야 기회 확대, 사회 경제적 약자를 위한 미취학 영재 지원, 정규학교 시스템에서의 예시 프로그램 개발 등 - 의 지원, 셋째, 영재에 관한 정보 확산을 위한 연방 기구의 설치 및 교사 및 일반 대중의 영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송매체의 활용, 영재 지원을 위한 적절한 예산의 확보와 사용이 담보될 수 있도록 주와 연방 차원의 리더 배치, 넷째, 영재에 대한 발굴 및 평가 방법의 지원, 다섯째, 예시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말랜드 보고서에 제시된 차별화된 영재교육과정으로서 영재교육은 비록 명료한 성격 제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학교에서 영재학생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적 환경과 내용이 필요한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 4. 영재교육 정책과 제도

말랜드 보고서가 미국의 영재교육 발전에 있어 미친 다른 영향은 영재교육 정책과 제도적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과 제도적 제안은 주로 제7장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위해 Marland는 당시의 영재교육과 관련 되는 법률들, 예컨대 초중등교육법, 특수교육법(Education of the Handicapped Act, 1970),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 1965), 국가교육방위법(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 1958),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 1964), 직업교육법(Vocational Education Act, 1963)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비록 당시의 관련 법률에는 영재들을 위해 교육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bar)’ 조항이 없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법률들이 장애나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예산 지원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영재에 대한 구체적 예산 지원 명시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재학생이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 학생의 범주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 법률적 한계임을 지적한다(Marland, 1972: 104). 또한 말랜드 보고서는 영재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연방 교육부에서 영재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예산 운영과 정책 실시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1970년 영재를 대상그룹(targeted population)으로 지정한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되지만 아직 법이 실효가 나타나기 전으로서, 연방 교육부에서의 영재교육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각 주와 지역에서의 영재교육을 위한 별도의 예산 인센티브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영재교육 운영을 위한 제도가 갖추어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는 가운데, 영재교육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하여 연방 교육부 안에 국가 수준(national activity)에서 영재교육에 관한 관리, 평가, 프로그램 운영 등과 같은 활동을 총괄할 수 있는 국가 센터나 기구(national center or agency)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Marland, 1972: 109-110). 이를 위해 말랜드 보고서는 국가 수준의 영재교육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전략으로서 연방 교육부의 국(bureau) 차원에서 영재교육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혹은 국 내부의 실(division) 차원이나 아니면 영재에 관한 자원을 조율하는 단위 차원에서 영재프로그램 그룹(program group)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보고서는 영재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과 법률은 주와 지방의 교육기구에 대한 지원과 교사 연수 및 여타 영재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funds)을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영재를 대상으로 한 예산 사용을 법의 규정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예산 사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반드시 예산을 법으로 명시하되 예컨대 교사교육 수준, 지역 수준, 주 수준, 연구 수준, 연구의 활용 및 확산 수준 등과 같이 예산의 구체적 사용 수준(level)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Marland, 1972: 110). 이와 같은 제안을 바탕으로 말랜드 보고서는 말미에 향후 영재교육 효율적 실천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구체적 실천 방안(action step)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Marland, 1972: 119-125).

첫째, 연방 정부의 역할에는 영재교육의 목표, 영재 판별, 연방과 주의 협력 체계 강화 방안, 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한 행정 체계 및 정책, 공공 및 민간 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도록 한다. 둘째, 현 연방교육부에서 영재교육에 관한 업무는 학교제도부위원(Deputy Commissioner for School Systems)의 주도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초기에는 전문가와 비서, 지원 인력으로 구성된 3명으로 구성한다. 셋째, 영재교육의 성공적인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및 정확한 비용, 평가 개선, 모범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관한 국가 수준의 조사를 실시한다. 넷째, 연방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제5장(title V) 및 기타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영재교육에 관한 주 교육국(State Education Agencies)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 다섯째, 연방 교육부는 1972년 여름에 개최될 2곳의 리더십 훈련 기구를 지원하여 주 정부 차원에서 영재교육을 위한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 여섯째, 연방교육부는 소수자 집단에서의 학습문제와 학습 기회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를 지원한다. 일곱째, 연방교육부는 국립교육연구 및 개발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를 통해 영재를 위한 채용자 기반(employer-based) 진로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여덟째, 위원장은 영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육개혁에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 1개의 실험학교 프로젝트를 운영하도록 한다. 아홉째, 연방 교육부는 각 주의 교육당국과 긴밀히 소통하여 초중등교육법 제3장(title III)에서 규정한 활동들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열째, 10개의 지역 교육사무소 당 1명의 영재교육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연방 교육부와 연락을 취하고 영재교육 운영에 대한 지원과 결과의 확산 등의 영재교육을 지원하도록 한다. 열한째, 현재 연방 교육부의 고등교육 관련 프로그램 가운데 영재교육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점검함으로써 영재의 잠재력과 영재 교사들의 잠재성을 극대화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나 저소득층 등의 그룹과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예비 영재교사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제안들 특히 영재에 대한 정의 제시의 필요성, 영재 선발에 관련된 규정 마련, 영재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부서의 설치 및 전문 인력 배치, 연방 예산의 운용을 위한 명료한 법적 근거 마련, 예비영재교사 지원 및 영재교사 재교육을 위한 규정 마련 등과 같은 제안들은 이전의 미국 영재교육에서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제안들로서 그 후 영재교육이 연방 정부 차원에서 법률적, 제도적 기초 위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데 초석을 놓게 된다



(Passow & Rudnitsky, 1993).

그 예로, 말랜드 보고서에서 지적한 교육에서의 영재들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이 전무하다는 점과 미래 자원으로서 영재들에 대한 지원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여 당시 상원의원이던 Javits 의원은 1972년 영재교육을 위한 예산(1973년 5000만 불, 1974년 6000만 불)을 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한 영재교육지원법(Gifted and talented Children's Education Act)을 발의한다(Carter, 2002). 비록 이 법안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지만, 그 후 Javits 의원은 다시 1973년에 영재교육을 위한 예산으로서 1억7000만불(1974~1976년)을 배정하고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내에 영재과(Office of the Gifted and Talented)를 설치하며 영재 교육기관과 교사 훈련 및 연구에 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마침내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Carter, 2002). 그리고 1974년 8월 21일 Ford 대통령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개정 초중등교육법(1974)에 따라 미 정부는 연방 교육부 내에 영재교육을 전담하는 부서인 ‘영재과(the Office of Gifted and Talented)’를 설치하게 된다(Delisle, 1999).

### III. 논의 및 시사점

지금까지 말랜드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전의 영재교육 법률 제정의 과정과 말랜드 보고서의 작성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바와 달리 이미 1970년 이전의 법률에서부터 영재교육에 대한 지원과 영재에 대한 정의가 연방 정부 차원의 법률에 등장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1958년에 제정된 국가 방위교육법(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 P. L. 85-864)은 ‘뛰어난 학생(able students)’에 대한 ‘판별과 지원(identification and encouragement)’을 규정한 조항을 둔 것은 연방 차원에서 영재교육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말랜드 보고서가 작성되기 10여 년 전인 1950년대부터 제기되었음을 시사한다. 비록 ‘뛰어난 학생’에 대한 정의를 법률로 상세화하여 제시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영재교육을 적시하는 법으로 보기에는 제약이 있겠으나, 적어도 연방 차원에서 영재에 대한 법률 사례를 1970년의 초중등교육법으로 보는 기존의 시각에는 다소 조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그동안 많은 연구와 저술들은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 영재에 대한 최초의 정의가 내려진 것은 1972년 발행된 말랜드 보고서인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방 차원에서 영재에 대한 정의가 제시된 것은 말랜드 보고서보다 이전인 1970년의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이라는 점에서 영재 정의에 관한 기존의 시점에 수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가령 초중등교육법의 제806조는 영재(Gifted and Talented Children)를 ‘뛰어난 지적 능력 또는 창의적 재능을 가진 아동(Children who have outstanding intellectual ability or creative talent)’으로 정의한 것이 그 예이다. 다만 영재 정의에 있어서 말랜드 보고서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기존의 영재 정의가 주로 지능의 관점에서만 인식하던 방식을 벗어나 창의성과 리더

십, 그리고 영역을 기존의 수학 및 과학뿐만 아니라 예술과 신체운동 등의 다양한 능력과 범위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Gagne, 1993).

셋째, 말랜드 보고서는 영재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과정의 무엇인가를 당시의 광범위한 조사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교육과정이 영재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이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재들의 인지적 특성과 학습 양식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과정(differentiated curriculum)’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는 영재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형식의 중요성을 제기하는데 영향을 주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영재교육에 관한 다양한 제도와 기구들이 제안되었다. 1974년 연방 교육부 내에 영재교육을 전담하는 부서로서 ‘영재과(Office of Gifted and Talented)’가 설치된 사례 등은 직접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1950~1970년대는 미국 사회에서 영재교육이 정책이나 교육 실천적 차원을 넘어 연방 법률에 근거한 법과 제도적 차원으로 자리매김되는 중요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국가와의 경쟁을 구도로 하는 가운데 영재를 미국의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미래적 자원으로 바라본 것이 영재교육의 범을 마련과 제도 수립의 주요 논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영재교육은 초기 국가·사회적 관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Marland를 중심으로 연방 차원에서 영재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법률 제정과 제도 마련을 강구하게 된 것은 바로 영재교육의 미래 자원적 가치에 대한 미국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말랜드 보고서의 제안과 당시의 영재교육 법 조항은 사회적 약자나 저소득층 학생과 같은 소수자의 영재교육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다. 1970년 초중등교육법이 장애학생과 영재 학생에 대한 지원을 동시에 규정한 것이나, 1972년 말랜드 보고서에 영재교육에 관한 연방 정부의 역할로서 사회적 약자나 저소득층 등의 그룹과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을 점검하도록 한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접근은 비록 시기에 따라 영재교육에 대한 강조점이 사회적 필요성이나 개인의 교육 권리적 당위성의 어느 한쪽에 주어질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사회적 측면과 교육 권리적 측면이 두 축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영재교육 법 조항과 관련하여 말랜드 보고서가 영재교육에 관한 구체적 예산 사용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것은 주목할만 하다. 왜냐하면 영재교육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대안이 모색되는 과정에서 비록 법률을 통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는 했지만 예산 사용에 관한 구체 조항이 없으므로 인해 영재교육 운영의 어려움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Marland는 보고서를 통해 영재교육을 위한 예산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법률에 구체적으로 영재교육을 위한 예산 규정을 제안한 것이다. Marland의 이같은 지적은 우리나라 영재교육 진흥법과 시행령에서 여전히 예산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영재교육의 실효성은 정책 의지나 제도의 기반뿐만 아니라 예산 규정의 명료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영재교육법률에서 예산 조항을 보다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교육부 (2013). 제3차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보도자료 2013.10.4.
- 구자역, 김홍원, 박성익, 안미숙, 이순주, 조석희 (2002). *동서양 주요 국가들의 영재교육*. 서울: 문음사.
- 김태서 (2007). *한국 영재교육의 발전과정: 1970-2006*.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박성익, 조석희, 김홍원, 이지현, 윤여홍, 진석언, 한기순 (2003). *영재교육학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 이재분, 강병직, 이덕난 (2012). *영재교육진흥법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희권 (2009). *영재교육 정책: 어제와 오늘*. 서울: 박학사.
- 조석희, 오영주 (1997). *영재교육 정책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Carter, J. E. (2002). *The Failure of National Research Center for the Gifted and Talented and the Need for the Legislated Federal Standards in the Educ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ed*. Retrieved September 30, 2013 from <http://www.wizardanswers.com/files/gifted.pdf>.
- Delisle, J. R. (1999). A Millennial Hourglass. *Gifted Child Today Magazine*, 22(6), 26-32.
- Gagné, F. (1993). Constructs and models pertaining to exceptional human abilities. In K. A. Heller, F. J. Monks & A. H. Passow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giftedness and talent* (pp. 209-232). New York: Pergamon.
- Gubbins, E. J. (Ed.). (1994, Winter). *NRC/GT: When "differentiated" becomes disconnected from curriculum*. The National Research Center on the Gifted and Talented Newsletter.
- Jolly, J. L. (2009). Historical Perspectives: Sidney P. Marland, Jr. (1914-1992). *Gifted Child Today*, 32(4), 40-65.
- Marland, S. P., Jr. (1972). *Educ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ed: Report to the Congress of United States*.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 Welfare Office of Education.
- Olszewski-Kubilius, P., & Thomson, D. (2003). Gifted Education Programs and Procedures. In Irving B. Weiner, William M. Reynolds & Gloria E. Miller (Eds.), *Handbook of Psychology, Educational Psychology* (pp. 487-510).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 Passow, A. H. (1993). National/state policies regarding education of the gifted. In K. A. Heller, F. J. Monks & A. H. Passow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giftedness and talent* (pp. 29-46). Oxford: Pergamon.
- Passow, A. H., & Rudnitski, R. A. (1993). *State Polies regarding education of the gifted as reflected in legislation and regulation*. National Research Center on the Gifted and Talented, University of Connecticut, Storrs. (CRS93302)
- Public Law 81-507 (1950). *National Science Foundation Act*. Retrieved March 5, 2013 from

- <http://www.nsf.gov/about/history/legislation.pdf>.
- Public Law 85-864 (1958). *National Defence Education Act*. Retrieved March 3, 2013 from <http://www.gpo.gov/fdsys/pkg/STATUTE-72/pdf/STATUTE-72-Pg1580.pdf>.
- Public Law 89-10 (1965).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Retrieved March 5, 2013 from <http://www.gpo.gov/fdsys/pkg/STATUTE-79/pdf/STATUTE-79-Pg27.pdf>.
- Public Law 91-230 (1970).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Retrieved March 4, 2013 from <http://www.gpo.gov/fdsys/pkg/STATUTE-84/pdf/STATUTE-84-Pg121.pdf>.
- Russo, C. (2001). Un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Gifted Students: Robbing Peter to Pay Paul? *Fordham Urban Law Journal*, 29(2), 727-758.
- Stephens, K. R. (2008). Applicable Federal and State Policy, Law, and Legal Considerations. In S. I. Pfeiffer (Ed.), *Handbook of Giftedness in Children: Psych-educational Theory, Research, and Best Practices* (pp. 387-408). FL: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 Stephens, K. R., & Karnes, F. A. (2000). State definitions for the gifted and talented revisited. *Exceptional Children*. 66(2). 219-318.
- Tomiko, B. N. (2003).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of 1965. In B. K. Landsberg (Ed.), *Major Acts of Congress* (pp. 232-233). USA: Macmillan Reference USA.
- Ward, V. S. (1961). *Finding the gifted: An axiomatic approach*. Columbus, OH: Charles E. Merrill.
- Zettel, J. J. (1982). The education of gifted and talented children from a federal perspective. In J. Ballard, B. A. Ramirez & F. J. Weitraub (Eds.), *Special education in America: Its legal and governmental foundations* (pp. 51-64). Reston, VA: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 Abstract =

## A Research on the Changes of the Gifted and Talented Law in U.S.: Focusing on the Marland Report

Byoungjik Kang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research deals with the changes of the laws related to gifted education focusing on the Marland Report. As result, contrary to conventional argument for the beginning of legal ground for gifted education, 1958's 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P. L. 85~864) which stipulated the article for 'identification and encouragement' for 'able students' can be said the first legislation of gifted education in the level of federal government. In the case of definition of the gifted, prior to 1972's Marland Report, there was the first legal definition in the Section 806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P. L. 91~230, 1970), which said "Children who have outstanding intellectual ability or creative talent". However Marland Report expanded the realm of the gifted from the area of intelligence to the area of leadership, art and psychomotor ability. On the basis of Marland Report, in 1974 the Office of Gifted and Talented was set up in the Department of Education for dealing with gifted education in federal. Further, Marl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tipulating article related to funds for gifted education in law. Without manifesting funds for gifted education in law, he knew very well how hard it was to practice gifted education in reality. This implies that regulation funds for gifted education is crucial for effective actualization of gifted education.

**Key Words:** Law of gifted education, Marland Report, 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Definition of the Gifted

1차 원고접수: 2013년 10월 2일
수정원고접수: 2013년 10월 25일
최종게재결정: 2013년 10월 25일